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9.] [국토교통부령 제1233호, 2023. 7.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4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①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4. 7., 1999. 10. 19.>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쟈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4. 법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②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腦電症)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 3. 21., 2013. 3. 23., 2021. 8. 27.>
- ③ 법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 3. 21., 2013. 3. 23.>
- ④ 법 제27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3. 3. 21., 2013. 3. 23.>
- ⑤ 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공립병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개정 1997. 4. 7., 1999. 10. 19., 2003. 9. 26., 2007. 8. 17., 2013. 3. 21.>

부칙 <제1233호, 2023.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등의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기계의 정기 검사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매매용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계의 제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 등록번호의 새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새겨진 등록번호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새겨진 것으로 본다.